

Jisung Horizon Newsletter

May 2010 Vol.3. No.20

01 법률칼럼

-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최수진 변호사)

05 열려라 중국

- 중국 부동산 시장 조절 (최금란 중국 변호사)

08 생생 러시아

- 중앙아시아지역 각국의 담보제도 (채희석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11 주목! 이 판례

-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될 때, 가지급 금의 반환범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 2. 16 선고 2009나101628 판결)

17 최신법령

-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 마련 등
- 어음 및 수표의 법률용어 순화 등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인 험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20 지평지성 소식

- 지평지성, '아시아 로(Asialaw)'의 2010년판 평가 4개 분야에서 우수 평가 획득

22 업무동향

- 신한은행과 카자흐스탄 국영석유가스기업(KMG)의 5억달러 MOU 체결 관련 업무 수행
- 지평지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MEMS팹 민영화 관련 자문 제공중

24 지평지성 단신

- 지평지성, 제6회 서울지방변호사 회장기 축구대회 응원상 수상
- 이호원 대표변호사, '국제법률콜로퀴엄 2010 – 전자소송의 국제적 동향' 참석, 이은우 변호사, 토론자로 참여
- 배동희 공인노무사, 『통합노동법』 출간

27 영입인사

- Nguyen Thi Thu Ha 베트남변호사



지평지성
JISUNG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시 종로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8, 11층
TEL: 02-6050-1600 FAX: 02-6050-1700 <http://www.js-horizon.com> E-mail: master@js-horizon.com
Copyright © JISUNG HORIZON Attorneys at Law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법률칼럼)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최수진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2008년부터 본격화된 부동산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 중 상당수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2009년경부터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들어 하급심에서 몇 개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최근 하급심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대법원의 판단 경향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해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우선, 대법원은 러시아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자산운용에 있어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탁회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탁재산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면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인데)...피고 회사는 1998. 6.경까지도 러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시아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한 끝에...투자금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판단을 변경해야만 할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투자금을 회수하거나 투자 종목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2) 운용계획서 등의 제공에 따른 투자신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다음으로, 대우그룹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투자신탁설명서는 그 성질상 그 수익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신탁의 운용개념과 방법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 제공하는 자료로서...유동적(인)..내용들을 그때마다 위 안내자료에 수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편입채권의 신용등급 준수 여부는 편입일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고...유가증권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당시 채권시장의 상황에서 대우채가 제대로 매각되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환매대금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체 신탁재산 내 대우채의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점 등의 사실을 알 수 있다...(따라서) 가격조정 혹은 신속처분에 관한 어떠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의 조재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

반면, 대우그룹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신탁운용회사가 약관과 다른 내용의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한 다음 운용계획서를 위반한 사안에서는 "운용계획서에서 명시한 일정 등급 이상의 기업어음을 매입할 필요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와 달리 운용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

(3) 재량적 투자 판단의 허용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끝으로, 대법원은 투자자가 투자자문회사를 상대로 선관주의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데)...(1) 위험선호도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한 점)...(2) 9.11테러사건 발생 당시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기관투자자들은...9.11테러사건과 같은 유형의 위험까지 대비하여 거래전략을 구축한 투자자문사의 사례가 소개되지 않는 점, (3) 피고 회사가 9.11테러사건 발생 이전에는..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올린 점...(4) 대안들은...안정성을 추구한 결과 수익률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피고 회사의 투자일임 담당자들이 주가지수의 변동을 잘못 예측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투자일임 담당자들의 옵션거래 과정에서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투자 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3856 판결).

3. 최근 하급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운용계획서와 달리 예금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은 사례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0. 선고 2009가합109031 판결). 또한 투자설명서와 달리 거래상대방을 변경한 사례에서도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4. 선고 2008가합42275, 60976 판결).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대보증인을 임의로 교체한 사례에서 "(2) 연대보증인을 교체할 경우 아파트의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수입금을 대출원리금 상환 재원으로 조기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3) 이자선취나 원금유보계획의 이행에 차질이 없었고, 그 당시에 00에 별다른 부도 위험이 없었던 점...(5) ...0000(변경 전 연대보증인)가 연대보증인으로 남아 있었더라면 0000로부터 9억 2,000만 원 이상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연대보증인을 ...교체한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정을 근거로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4. 선고 2009가합42282 판결). 그 외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부동산투자신탁에 있어 자산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운용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6. 선고 2008가합26323 판결).

4.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확립된 기준을 찾기는 어렵지만, 위 판례를 종합해 볼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관주의의무의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① 투자설명서 및 운용계획서 등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② 어떠한 행위가 펀드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③ 펀드의 이익에 해가 될 만한 사정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④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펀드에 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및 자산운용회사로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자산운용업무 수행과정에서 위와 같은 기준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JS-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열려라중국)

중국 부동산 시장 조절



최금란 중국변호사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2009년 3월을 기점으로 빠른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3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상승하였고, 도시별로는 선전이 20.1%, 베이징이 12.3%, 상해가 10.7% 등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가통계국의 부동산 가격 통계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실제로는 이보다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36개 도시에 대해 매월 조사하고 있는 신규 상품방의 제곱미터당 가격은 2010년 2월 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은 현재의 집값으로는 국민의 85%가 집을 살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에 대해 중국 정부는 2009년 말부터 일련의 정책(각주1)을 발표하여 왔습니다. 부동산 대출조건을 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외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주택 공급 추진 등 부동산의 안정화를 위한 거시적, 미시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정책이 부동산 매매 또는 개발에 대한 기존 법률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매매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대출조건 강화, 세제 부여 등 간접적 정책을 통해 부동산 매매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는 2010년 1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월 <국무원 판공청의 부동산 시장의 온전하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금 비율을 상향 조치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두 번째 주택 매입 시에는 계약금으로 40%를 지불해야 하고 세 번째 주택 매입 시에는 계약금으로 50%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후 중국정부는 불과 3개월 만인 2010년 4월 <국무원의 부분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향하는 것을 제재할 데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첫 번째 주택의 계약금 30% 지급 대상을 면적 9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한하고 두 번째 주택 매입 시 지불해야 하는 계약금 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주택 매입 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금은 큰 폭으로 인상하되 상업은행에서 결정하고 대출중단도 허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책의 실시로 인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파기로 인한 분쟁이 사회문제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올해 초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정책은 중국 내국인의 부동산 매매 또는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 또는 제한규정이 아니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사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새로이 제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국정부는 2006년과 2007년에 외국인, 외국기업 혹은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부동산 매매, 개발, 경영을 금지, 제한하는 정책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기관의 중국 내 대표처 혹은 지사 및 중국 내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지가 1년 이상(1년 포함)인 외국인만이 자가용 건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 자가용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을 설립해야 하고, 법인 설립 전 우선 토지사용권 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 관련 부서/부동산개발상/부동산 소유자를 통하여 토지사용권 또는 건물 소유권의 출양/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는 최근 중국 부동산 경기의 과열로 실무상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이와 같이 대출조건 강화, 세율 조정 등 간접적 조절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추구할 뿐 분양 최고가 제한 등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재정수입 확보 등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각주]

1)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 주택 양도 영업세 조절정책에 대한 통지(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个人住房转让营业税政策的通知)>;

<국무원 판공청의 부동산 시장의 온전하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的通知)>;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첫 번째 일반 주택 구매 시 계약서 정책에 관한 통지(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首次购买普通住房有关契税政策的通知)>;

<국무원의 부분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향하는 것을 제재할 데 관한 통지(国务院关于坚决遏制部分城市房价过快上涨的通知)>;

<주택과 도시, 농촌 건설부의 부동산시장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상품방 예비매매 제도를 완선화할 데 관한 통지(住房和城乡建设部关于进一步加强房地产市场监管完善商品住房预售制度有关问题的通知)>

JS-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생생 러시아)

중앙아시아지역 각국의 담보제도 - 아제르바이잔 편



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의 담보제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바쿠유전을 비롯하여 아제르바이잔은 다른 카스피해 연안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전에 바탕을 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스피해 유전 개발을 통한 오일 달러 유입으로 아제르바이잔은 2000년 이후 GDP 성장률이 연속적으로 10%를 상회하였고, 2007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 내 최고 경제성장률인 25%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국제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성장률을 역시 다소 둔화된 상태이지만, 원유 생산량의 증가와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라 2010년의 경제성장률은 다시 두 자리 수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아제르바이잔 민법과 저당권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i)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와 그 주소, (ii) 담보물, (iii) 피담보채무, (iv) 피담보채무의 액수, (v) 피담보채무가 발생한 계약의 당사자 및 체결지, (vi)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자의 권리, (vii) 담보물이 등기된 등기소 등이 명시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되어 있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저당권은 등기대상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상 외국인이 직접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아제르바이잔 민법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외국인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당권자가 외국인인 저당권설정계약에는 위와 같은 토지의 강제처분에 관한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토지 임차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

아제르바이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고, 11개월 이상의 임차권은 등기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담보권 설정 역시 등기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동산 임차권에 대한 담보권은 부동산 임대차기간 내에서만 설정될 수 있고, 담보권 설정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유지나 시유지 임차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 혹은 시의 동의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유사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토지의 경우와 달리 외국인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에 따른 매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지상 건물과 별개로 설정될 수 있는 반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반드시 토지에 대한 저당권과 함께 설정되어야 하고, 건물 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저당권설정자가 토지에 대하여 보유하는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타

아제르바이잔 관련법령에 따라 은행계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예금질권은 흔히 이용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한편, 아제르바이잔 민법은 보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계약은 (i) 보증인, (ii) 채권자, (iii) 피보증채무의 성격 및 액수가 명시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법률상 보증계약에 반드시 공증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인은 채무자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집니다. 국내와 유사하게 아제르바이잔 역시 보증을 일반적인 보증과 연대보증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보증의 보증인은 이른바 '검색·최고의 항변권'을 가지게 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바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제르바이잔 관련 법령은 주식회사의 주식 및 유한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JS-Horizon

(주목! 이 판례)

가입행선고부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될 때, 가지급금의 반환범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 2. 16. 선고 2009나101628 판결)

1. 들어가며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는 연 20%라는 지연이자 부담 때문에 패소 금액을 가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급심에서 가입행선고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입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입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 판결 선고 후 가지급금을 받은 당사자가 원심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상급심 판결 선고 후 가지급받은 원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20%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가지급금을 지급한 자에게도 위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라 그가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면, 자기 의사에 상관없이 이를 수령한 당사자로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을 수령한 날부터 상급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역시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입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 까지는 명확한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피고가 20%의 지연이자를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가지급금을 지급하였고 가입행선고부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뀌었다면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상급심 판결선고일부터 지급일 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2. 사실관계의 개요

이 사건의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심에서 승소함.
- 2) 피고가 2심 법원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하여 패소금액을 원고에게 임의로 가지급(이하 위 금액을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합니다)함.
- 3)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을 수령하기 전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금의 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하려는 의사도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냄.
- 4) 원고가 승소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됨.
- 5)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함..
- 6) 그러자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위 가지급금을 수령한 날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함.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을 근거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가지급금의 지급일부터 가지급물반환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나.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 1)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가 가집행에 개시하거나 개시하려는 기세를 보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연 20%의 지연이자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임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구하고 있는 이자 상당의 손해는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로 볼 수 있으며,
- 2) 원고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가지급금을 받아 보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던 선의의 수익자였고,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비로소 가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따라 위 대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비로소 연 5%의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따름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대상판결의 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은 환송 전 당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에 피고가 그 집행 때문에 부득이 지급하였거나 원고가 가집행선고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기세를 보인 까닭에 피고가 그 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환송 전 당심 판결이 상고심 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피고는 환송전 당심 판결에 기하여 원고에 이 사건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던 것인데 위 판결이 상고심 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어 원인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 반환채무의 범위는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에 대하여 상고심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의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되어 악의의 수익자가 된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 이를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의 가지급금반환신청은 이유없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5. 사실관계의 요지

이 사건의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원고가 피고에게 금 약 3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②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승소함.
- ③ 피고가 2심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하여 원고에게 패소금액을 임의로 가지급함.
- ④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을 수령하기 전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금의 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하려는 의사도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냄.
- ⑤ 원고 승소의 2심 판결이 대법원에 의하여 파기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됨.
- 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함.
- ⑦ 그러자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을 근거로 원고는 위 가지급금을 수령한 날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함.

6.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을 근거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가지급금의 지급일부터 가지급물반환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주장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다투었습니다.

첫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지급금을 청구한 적도 없고 가집행을 할 듯한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 지연이자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지급금은 민사소송 법 제215조 제2항의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가 구하고 있는 이자 상당의 손해 또한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가 아니다.

둘째, 원고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가지급금을 받아 보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던 선의의 수익자였고,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비로소 악의의 수익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비로소 연 5%의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따름이다.

7.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임의로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는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가 아니므로 민법 제21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악의가 된 때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면 되는데 악의가 된 때는 바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습니다.

첫째, 그동안 피고가 임의로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반환하는 법적 논리가 불분명했습니다. 위 판결은 이러한 사안에는 민법 제21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둘째,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악의가 된 때로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각주1) 대상판결은 악의가 되는 순간을 바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는 때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가지급금을 수령한 날부터가 아닌 종전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상급심 판결이 선고된 때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대상판결은 고등법원 판결이므로, 가지급금 반환범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명확해졌다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논리적인 해석에 비추어 임의지급된 가지급금은 위 조항 소정의 가지급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입장은 충분히 수긍할 만합니다. 대상판결이 상고심에서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원·피고 모두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가지급금에 대한 재판부의 논리가 합리적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지급금 수령자 즉 원고의 입장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가지급금이 원고의 의사에 관계없이 임의로 지급된 것임을 과연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문제 될 것입니다.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가 가지급금을 임의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피고가 지급의사를 밝혔을 때 "원고는 가집행할 의사가 없고 가지급금을 청구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습니다. 유사한 쟁점이 다투어질 때에도 원고는 바로 이러한 공문을 통해 가지급금 수령이 원고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비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가지급금 지급자 즉 피고의 입장이 되었을 때입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피고로서야 일단 20%의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는 게 급선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뀐다면 지급일로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이자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주]

- 1) 민법 제748조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JS-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최신법령)

1.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법률 제10269호, 2010. 4. 15. 시행)

1.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낮추었고(제6조), 영업인가 후 6개월이 경과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70억원으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0억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제10조).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이 단일 중소형 부동산으로 넓어질 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공모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20 이상으로 축소하고, 주식소유제한 비율은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35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법 제14조의3 제1항 단서 및 제15조 제1항 단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공모비용의 감소 및 기관투자 유치를 통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부동산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3.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및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가능한 재산으로 추가되었습니다(제19조 제2항).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수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식매수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0조의2 제3항). 이와 같이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주식매수를 하게 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5. 다운로드 :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 개정\(법률 제10269호, 2010. 4. 15.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 마련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개정(법률 제10272호, 2010. 10. 15. 시행)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및 임대료 인하 등의 대상 토지를 확대하였습니다(제13조).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또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매각하거나 임대기간 연장 및 임대료 인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요건 중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의 요건을 삭제하고,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를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제14조의2 제1항). 이에 따라 소규모 외국인투자라 하더라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연구개발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법 제18조 제1항).
4. 다운로드 : [「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개정\(법률 제10272호, 2010. 10. 15. 시행\)](#)

3. 어음 및 수표의 법률용어 순화 등

: 「어음법」일부개정(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시행) 및 「수표법」일부개정(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시행)

1. 어음법 및 수표법상의 법률용어를 한글로 바꾸었습니다. 다만,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2.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을 '보충지'로, '소구'를 '상환청구'로, '말미'를 '끝부분'으로, '지급의 날'을 '지급한 날'로 하는 등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었습니다.
3. 다운로드 : [「어음법」일부개정\(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시행\)](#) 및 [「수표법」일부개정\(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시행\)](#)

JS-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지평지성 소식)

지평지성, '아시아 로(Asialaw)'의 2010년판 평가 4개 분야에서 우수 평가 획득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법률전문 저널 ASIALAW의 2010년판 평가에서 4개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운송, 해운 및 항공 (Shipping, Maritime & Aviation)'에서 1위를 차지 하였으며, '인수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및 '금융 & 파이낸스 (Banking and finance)'에서 2위를 비롯하여, '소송중재 (Dispute Resolution)' 분야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특히 지평지성의 이춘원 변호사는 Asialaw Leading Lawyers 2010 Edition에서 한국 Shipping & Maritime 분야 Leading Lawyer로 선정되었습니다.

ASIALAW는 런던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유로머니지가 발행하는 IFLR1000誌의 아시아권 자매지로서, 금융관련 법률업무를 다루는 변호사들과 국제 금융계 인사들로부터 법률실무와 관련해 높은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아시아권 우수 로펌을 부문에 따라 선정하고 있는 ASIALAW의 평가는 전 세계 각국에서 우수 로펌 선택에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 [Asialaw Profiles - South Korea Law firm rankings](#)
- [이춘원 변호사, Asialaw Leading Lawyers 2010 Edition의 한국 Shipping & Maritime 분야 Leading Lawyer로 선정](#)
- [법무법인 지평지성 - IFLR1000誌 2010년 기업자문 전분야에서 우수 평가 획득](#)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ASIALAW 2010년판이 선정한 각 부문별 3위 이내 국내 로펌]

구분	운송, 해운 및 항공 (Shipping, Maritime & Aviation)	인수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s)	금융 및 파이낸스 (Banking and finance)	소송 · 중재 (Dispute Resolution)
1위	지평지성 김앤장·광장·Choi & Kim	김앤장 · 태평양 · 광장 · 세종 · 율촌	김앤장 · 태평양 · 광장 · 세종	김앤장 · 태평양
2위	율촌 · 오로라	지평지성 · 화우	지평지성 · 율촌	광장 · 세종 · 화우 · 율촌 · 충정
3위	태평양 · 화우 · 양현	충정 · 양현	에버그린 · 양현 · Kim Choi & Lim · 화우	지평지성 · 바른 · 양현 · Kim Choi & Lim

JS-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업무동향)

신한은행과 카자흐스탄 국영석유가스기업(KMG)의 5억달러 MOU 체결 관련 업무 수행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신한은행을 대리하여 신한은행과 카자흐스탄 국영석유가스기업 카즈무나이가스(KMG)가 5억달러 규모의 금융자문 MOU를 체결하는 것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1년간 카즈무나이가스가 향후 카자흐스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카스 피해 지역과 쿠릭항만 내의 오일 터미널 건설사업을 비롯, 각종 개발사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투자금융 업무의 금융자문 및 주선에 대한 우선적인 독점권을 부여받고 전문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카자흐스탄은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 중 하나로 석유, 가스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부문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외국인투자자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관련기사]

- 매일경제 - 신한銀, 카자흐스탄 국영석유가스기업(KMG)와 5억달러 MOU (2010. 4. 21.)
- 파이낸셜뉴스 - 신한은행, 카자흐스탄 5억달러 금융자문 MOU 맺어 (2010. 4. 21.)

[담당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홍진경 미국변호사

JS-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업무동향)

지평지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MEMS팹 민영화 관련 자문 제공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 4월 11일 연내 완료를 목표로 부설 RFID/USN센터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팹의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본건과 관련하여 민영화 추진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말까지 양산 장비 도입을 모두 끝낸 송도 MEMS팹은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센서 시장 활성화와 관련 산업 성장·발전을 위해 지경부와 인천 시의 공동 투자로 설립한 것으로, 8인치 웨이퍼로 MEMS 센서를 파운드리(위탁생산)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전자신문 - NIPA, MEMS팹 민영화 (2010. 4. 11.)
- 디지털타임스 - MEMS팹 연내 민영화한다 (2010. 4. 11.)

[담당변호사]



강경국 변호사



이경호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이병주 변호사

JS-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지평지성 단신)

지평지성, 제6회 서울지방변호사 회장기 축구대회 응원상 수상

법무법인 지평지성 축구단은 지난 5월 8일 토요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퓨쳐리더십 센터에서 열린 '제6회 서울지방변호사 회장기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응원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지평지성을 포함하여 총 12개팀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었으며, 매 경기마다 열정적이고 힘찬 응원을 펼쳐 '응원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제6회 서울지방변호사 회장기 축구대회 참가팀 기념촬영 (2010. 5. 8.)

JS-Horizon

이호원 대표변호사, '국제법률콜로퀴엄 2010 – 전자소송의 국제적 동향' 참석, 이은우 변호사, 토론자로 참여



(좌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호원 대표변호사)

(우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은우 변호사)

2010. 4. 23. 지평지성의 이호원 대표변호사와 IP·IT팀의 이은우 변호사가 25일 법의 날을 기념하여 대법원이 개최한 '국제법률콜로퀴엄 2010 - 전자소송의 국제적 동향'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는 '한국의 전자소송' 세션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국제법률 콜로퀴움은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회로 미국, 싱가폴의 전자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고위 관계자가 전자소송의 경험과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한국은 대법원에서 전자소송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원호신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이 한국의 전자소송의 도입 계획과 그 의미를 발표했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는 원호신 정보화심의관이 발표한 '한국의 전자소송' 세션에서 '전자소송에 거는 기대'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은우 변호사는 전자소송의 도입이 사법정의에의 접근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워싱턴 주 대법원이 택하고 있는 사법 접근성 확대 기술의 원칙(Access to Justice Technology Principles)과 같은 것이 필요하며, 전자소송의 도입 과정에서 수요자인 국민과 변호사 단체 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체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 '외국 전자소송은 어떻게...' 콜로퀴엄 개최

JS-Horizon

배동희 공인노무사, 『통합노동법』출간



(좌 : 배동희 공인노무사, 우: 「통합 노동법」)

지평지성 배동희 공인노무사의 「통합 노동법」이 2010년 4월 출간되었습니다.

『통합 노동법』은 노동법이 일반 사회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고, 세부적인 개별 법률들이 전체 노동법의 영역에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착안하여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등에 걸친 관련 법률들을 총망라하여 노동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법조문과 이에 대한 해설 및 실제 적용례를 구분, 서술하고 있어 노동법의 전체 틀 속에서 각 해당사항의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 교보문고 - '통합노동법'

JS-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영입인사)



Nguyen Thi Thu Ha

베트남변호사

thuhanguyen

@js-horizon.com

□ 학력사항

- 하노이 법대 졸업
- 국립 하노이대 외국어대 졸업 (영어전공)
- 하노이 법대 석사과정 수료

□ 경력사항

- Personnel Officer, Marie Stopes International Vietnam (International Non-Government Organization)
- Attorney at Law, Vision and Associates Legal
- Senior Associate, PBC PARTNERS Co., Ltd, Hanoi Representative Office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베트남 하노이사무소 베트남변호사

□ 인사말

It is a great pleasure for me to become a member of JS HORIZON VIETNAM LAW FIRM from 01 May 2010 and work together with all other members.

With my good background and more than five years of experience acting as attorney at law in a lot of major Vietnamese laws firms, specializing in M&A, inward and outward investment, employment, dispute resolution, trading and commercial, and taxation, I am very confident that this is a wonderful opportunity for me to further develop my career in a professional and international working environment as well as make the contribution to the further success and development of our law firm in the future.

It is also my hope that I will engage with the firm on a long-term basic and receive strong supports and assistance from all of you in work.

JS-Horizon



지평지성
JISUNG HORIZON

<http://www.js-horizon.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종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050-1600 Fax : 02)6050-1700

강북 분사무소
(100-161) 서울 종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30-7400 Fax : 02)6230-7599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00-743) 서울 종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050-0658 Fax : 02)6050-0708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호치민 사무소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Fax: 84-4-6266-1903

캄보디아 사무소
SK-Shinah Office, 2F No.797, Monivong Blvd. & St. 484, Phsar Doeum Thkov, Khan Chamkarmon, Phnom Penh, Cambodia Tel : 855-23-726-897 Fax : 855-23-726-457

라오스 사무소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rict, Vientiane, Laos Tel : 070-8275-4940 Fax : 856-21-264-344